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24

발의연월일: 2020. 10. 23.

발 의 자:이용빈·송옥주·신정훈

양정숙 • 이병훈 • 이용선

이은주 · 이탄희 · 장경태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부 용어(애완동물, 애완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 물"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 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임.

이에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법률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
| 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 행위) ① |
|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동반한 <u>애완동물</u> 의 배설물 | 4 <u>반려동물</u> |
| (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 |
|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 |
|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
| 5. • 6. (생 략) | 5. • 6. (현행과 같음) |
|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 | ② |
|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 |
|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 |
|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
| 아니 된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동반한 <u>애완견</u> 을 통제할 수 | 2 <u>반려견</u> |
|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 | |
| 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